

제425회 임시회

'25. 4. 22.(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김종필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5년 4월 11일

나. 회부일자 : 2025년 4월 14일

3. 제안이유

가. 2023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생활인구를 주요 인구 지표로 채택하면서, 행정적·재정적 자원의 배분 기준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생활인구 개념을 적용한 제도적 운영의 틀 마련이 시급함.

나. 이에 충청북도에 관심을 갖고 일정 요건을 갖추어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사람들을 '충청북도 생활도민'으로 정의하고, 행정 지원 체계 등을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체류인구 유입 확대와 지역 이미지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충청북도 생활도민의 정의(안 제2조)

나. 충청북도 생활도민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충청북도 생활도민에 대한 혜택 (안 제5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음창규)

가.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국제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 충청북도의 주민등록 인구는 1,591,177명으로 2020년 1,600,837명이 집계된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임.
- 2024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위험 지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소멸위험지수는 0.487로, '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 진입 단계'에 해당하고, 이는 전국 평균인 0.615보다 낮은 수치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냄.
-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시군은 보은군(0.131), 옥천군(0.181), 영동군(0.157), 괴산군(0.116), 단양군(0.146) 등 5곳이고, '소멸위험 진입 단계'에는 충주시(0.389), 제천시(0.334), 음성군(0.307), 증평군(0.447) 등이 포함됨.
- 한편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2023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과 함께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생활인구'라는 포괄적 인구 개념을 도입하였음.
- 지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인구까지 포함한 것으로, 지방소멸 위기, 인구 이동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정주형 인구가 아닌 체류형 인구에 중점을 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충청북도에 방문하고 체류하는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주 인구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충청북도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려는 사람들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충청북도 생활도민’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
 - 도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지사가 선정하는 사람을 “충청북도 생활도민”으로 정의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규정으로
 - “충청북도 생활도민” 제도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
- 안 제4조는 “충청북도 생활도민”의 선정에 관한 규정으로
 - 충청북도에 방문·체류하려는 사람을 “충청북도 생활도민”으로 선정하고 생활도민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생활도민증 기반 혜택을 통해 방문·체류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생활도민증 발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유효기간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행정절차와 정보시스템 구축 여부 등에 대한 실무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또한, 생활도민증 발급 및 혜택 제공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확보 방안과 함께 관련 기관 및 민간과의 협력 체계 구축, 혜택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는 충청북도 생활도민에 대한 혜택에 관한 규정으로

- 충청북도 생활도민에게 관광지 입장료 할인, 숙박·음식·체험 등 지역 자원 연계 할인 등 다양한 형태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생활도민의 방문과 체류를 유도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제공 가능한 혜택의 범위와 수준은 재정여건, 관련 법령,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이 요구됨.
- 또한, 혜택 제공에 따른 부작용이나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효과 분석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

○ **안 제8조**는 포상에 관한 규정으로

- 충청북도 생활도민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제도의 활성화 및 도정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제도의 확산 및 정착에 긍정적인 동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종합검토 의견

- 충청북도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정주 인구 중심의 기존 인구정책에서 나아가 체류 중심의 ‘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생활도민 개념을 도입하고, 충청북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문·체류 인구를 제도적으로 포섭하려는 시도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님.
- 다만, ‘생활도민’ 선정 기준 및 생활도민증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함. 또한, 민간 부문 협력과 지역 자원 연계, 예산 확보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이 병행되어야 함.
- 특히, 혜택 제공과 포상 조항은 그 취지가 타당하나, 형평성 문제나 과도한 재정부담, 사각지대 발생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본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지역 활력 회복과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실험적 제도로써 정책적 타당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 지침과 예산 계획이 수립되는 것을 전제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